

# 犯罪環境의 현상 分析

黃 活 雄  
(警察廳 法務擔當官)

## 1. 序 論

### 1.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10.13조치로 선포된 '犯罪와의 戰爭'<sup>1)</sup>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범죄의 원인을 이루는 環境條件을 分析, 향후 범죄발생크기의 예측은 물론 대응전략 수립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효율적인 犯罪와의 전쟁수행은 타당성있는 分析을 토대로 할때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와 같은 분석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同研究는 첫째, 지금까지의 범죄원인분석의 연구 경향 및 이론적 지식의 축적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고찰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최근 犯罪性 環境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環境的 측면에서 밝히는 데 그 근본목적을 둔다.

끝으로 여기에서 도출된 지식과 정보를 정부의 범죄 규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자원(人的, 物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犯罪억제 및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 2. 研究범위 및 方法

1)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이라는 용어는 1965년 미국의 존슨(L. B. Johnson)대통령이 최초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1990. 10. 13 특별선언형식으로 취해진 범죄규제정책의 하나임.

본 연구의 범위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인 중에서 犯罪性 環境조건의 分析에 한정한다. 이때 環境이란 犯罪行動 발생의 직·간접적인 影響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變數間的 關係에서 보면 종속 변수인 犯罪행동(Y)에 影響을 미치는 독립변수(X)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이 環境 요인을 크게는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국한하여 一般環境의 變化와 社會病理的 犯因性 環境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하되 후자인 社會病理的 犯因性을 分析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經驗적·실증적접근방법 (empirical-positive approach)에 의하여 事實문제중심으로 分析을 행하며 이 分析에 사용한 자료는 각종 1차 자료와 통계분석자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犯罪추이의 예측에서는 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각종 통계자료와 分析된 정보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교수단에 의해 작성된 것을 문헌자료로 활용했음을 밝혀둔다.

## Ⅱ. 社會環境요인의 犯因性에 대한 理論

社會環境요인의 犯因性 理論은 한마디로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라는 명제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이론을 소질설과 환경설, 一元論과 多元論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정신의학적, 생물학적접근, 심리학적접근, 그리고 범죄 사회학적접근 등이 대립하는 등 많은 원인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선정된 연구주제 및 대상에 따라 犯罪 사회학적접근으로 犯因性 環境이론을 中心으로 본 주제의 理論的 배경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初期犯罪社會學派의 주장

近代범죄학설의 발전과정에서 環境의 역할을 강조한 학설은 롬부로조(Lombroso)이전부터 프랑스를 中心으로 발전해 왔는데 특히 페리(E. Ferri)에 의해 사회학적 방법과 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되

본 연구의 범위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인 중에서 犯罪性 環境조건의 分析에 한정한다. 이때 環境이란 犯罪行動 발생의 직·간접적인 影響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變數間的 關係에서 보면 종속 변수인 犯罪행동(Y)에 影響을 미치는 독립변수(X)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이 環境 요인을 크게는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국한하여 一般環境의 變化와 社會病理的 犯因性 環境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하되 후자인 社會病理的 犯因性을 分析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經驗적·실증적접근방법 (empirical-positive approach)에 의하여 事實문제중심으로 分析을 행하며 이 分析에 사용한 자료는 각종 1차 자료와 통계분석자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犯罪추이의 예측에서는 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각종 통계자료와 分析된 정보는 韓國생산성본부와 교수단에 의해 작성된 것을 문헌자료로 활용했음을 밝혀둔다.

## Ⅱ. 社會環境요인의 犯因性에 대한 理論

社會環境요인의 犯因性 理論은 한마디로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라는 명제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이론을 소질설과 환경설, 一元論과 多元論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정신의학적, 생물학적접근, 심리학적접근, 그리고 범죄 사회학적접근 등이 대립하는 등 많은 원인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선정된 연구주제 및 대상에 따라 犯罪 사회학적접근으로 犯因性 環境이론을 中心으로 본 주제의 理論的 배경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初期犯罪社會學派의 주장

近代범죄학설의 발전과정에서 環境의 역할을 강조한 학설은 롬부로조(Lombroso)이전부터 프랑스를 中心으로 발전해 왔는데 특히 페리(E. Ferri)에 의해 사회학적 방법과 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되

었다.<sup>2)</sup> 그는 범죄는 물질적, 지리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인자의 총합적 산물이며 일정한 사회환경에 일정한 人的·物的상태가 수반한다면 犯罪의 수는 일정하다는 「犯罪포화의 법칙」을 제창했다.

다음으로 피뜨레(Quetelet)와 게리(Guerri)의 주장이다.<sup>3)</sup>

이들은 犯罪의 지리적 분포 및 기후·연령·성·계절·교육상태 등과의 관계를 분석, 犯罪性的 발전에 사회 및 자연환경의 역할이 크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따르드(Tarde)와 듀르케임(Durkheim)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따르드는 맑스주의적 세계관에서 범죄의 원인을 社會制度 즉 자본주의경제 질서의 제도적 모순에서 찾았을 뿐 아니라 犯罪행동은 사회적 과정·생활과정에서 「모방」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거리의 법칙」, 「上에서 下로의 법칙」, 「삽입의 법칙」을 각각 제시하였다.<sup>4)</sup>

한편 듀르케임은 自殺·犯罪문제가 사회문화구조의 모순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犯罪行爲의 正當性을 설명하고 있다.<sup>5)</sup>

## 2. 美國犯罪사회학파의 제이론

### 1) 分化的 接觸理論(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이 이론은 美國犯罪學의 최초 연구자인 서덜랜드(E. H. Sutherland)가 1939년 제창한 것으로서 人間行動의 설명에 있어서 犯罪者의 범죄발생순간의 과정에 대한 상황적·역동적측면보다 역사적·발생적 측면을 중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후자적 설명방법은 어떤 犯因性的 상황(유혹)이 주어졌을 때 그가 이를 犯罪행동의 기회로 삼느냐, 억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한 인격형성 배경에 관한 것이 핵심을 이룬다. 이에 따라 이 이론은 여러 가지의 명제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犯罪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交際·接觸을 통하여 學習(learning)을 하며 둘째, 이때의 學習은 犯罪행동의 동기·욕구·합리화·태도에 대

2) E. FERRI『Criminal Sociology:New Horizons in Criminal Law(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p.273 재인용),

3) 藤本哲也, 형사정책(동경, 靑林書院. 1984) p.88.

4) 신진규,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86 pp. 272-273.5.

5) 上揭書. p.273.

한 것과 犯罪수행방법에 대한 것인데 우선 동기·욕구·태도등을 법규범에 비추어 긍정 또는 부정하는 인식과정부터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복잡한 접촉과정에서 한 개인은 법규범 위반을 긍정하는 인식과의 접촉이 법규범 위반을 부정하는 인식과의 접촉보다 크게되거나 허용될 때 犯罪者가 된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分化的 접촉이론에 입각할 때 각 사회에서의 犯罪예방과 범죄자의 교정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접촉·교류하는 社會環境을 反犯罪的인 것으로 구성하고 학습할 때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그룹연관방법(group-relation method)이라 불렀다. 서덜랜드의 이 이론은 처음에는 計劃的 犯罪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이 제한을 철폐, 중등범죄와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분화적 同一化理論(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이 理論은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분화적 接觸理論의 弱點을 批判하고 그것을 補完하는 理論으로서 글레이저(D. Glaser)에 의하여 主張된다.<sup>7)</sup>

여기에서 말하는 분화적 동일화라 함은 自身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選擇의 課程을 거치며, 이 選擇의 課程에서 자기의 理想 모델과 同一視하는 限度內에서 선택하고 學習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同一視의 對象으로는 반드시 實在의 人間뿐만 아니라 觀念上의 人間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犯罪性의 학습은 반드시 개인간의 직접접촉에 의해서도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의 관념적 대상으로 부터도 관념적으로 동일화되는 과정을 거쳐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썬튼대, 이 理論의 核心은 人間은 自身의 行動을 許容하고 支持하는 생각을 갖고 實體 혹은 觀念上의 사람들에 대한 同一化의 程度에 依하여 또는 同一化의 對象인 사람들의 種類에 依하여 犯罪를

6) E. H. Sutherland and D.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66, pp. 79-80.

7) D. Glaser, "Criminal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 J. of Socio. Vol. 61, No. 5(1956), pp. 433-444.

修行하는 것이지 單純히 犯罪文化에 接觸했다고 해서 犯罪行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3) 下層階級 文化理論 (low class culture theory)

이 理論은 下層階級에 特徵的인 價値, 生活樣式, 行動樣式이 存在하는 것을 認定하고 이러한 下層階級에 獨特한 文化的 規範에 따른 경우에는 自動的으로 보다 넓게 社會의 法規範에 違反한다는 것을 主張한다.

이 理論의 主唱者인 밀러(Walter B. Miller)에 따르면 犯罪나 非行은 非行下位文化의 影響에 依하여 發生된 것이 아니라 下層階級の 共同社會 그 自體가 그 契機를 마련한다는 것이다.<sup>8)</sup>

이와 유사한 견해로 경제제도와 犯罪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은 犯罪성과 어떤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사회학주의 학파는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9)</sup>

미국의 사회학자 밀러(S. Miller)는 빈민계층의 분석에서 빈민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不安定한 빈민계층에서 犯罪發生이 많다고 주장한다.<sup>10)</sup>

이의 Anomie 理論, 分化的기회구조이론, 非行下位文化理論, 중화기술이론, 文化지체이론, 自己觀念이론 등이 있다.

### 3. 사회주의학파의 이론

칼 맑스의 자본론이래 社會主義학자들은 犯罪의 發生을 私有財産制, 自由競争, 이윤추구등의 자본주의의 체제모순에서 찾았다.

이들은 생물학적, 인종학적, 정신의학적 요인은 거의 무시하고 오직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역설, 경제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8) Walter B. Miller,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Gang Delinquency"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14., No.3, 1958, pp. 5-19.

9) C.R. Shaw & H.D. McKay,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1942, p 141.

10) S.M. Miller., The American Lower Class(Prenitice Hall) 1965. pp. 22-39.

### Ⅲ. 우리나라의 犯因性 環境要因分析과 예측

#### 1. 政治的要因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우리나라의 사회병리원인과 양상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상부계층에서 폭력 및 부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식이 사회전체에 확산되고 있으며, 폭력 및 부정에의 불감증이 야기되고 있고,

둘째, 정권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가 실추됨에 따라 공권력에 대한 일반적 저항의식이 나타남과 더불어 준법정신이 약화되고 있으며,

셋째, 국민의 정치·사회적 안정감이 저하되고 장기적 목표에의 방향감을 상실함에 따라 범죄와 범법의 일반적 분위기에 젖어 들뿐 아니라

끝으로, 억압받아 온 권리의식이 일시에 표출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오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법적·집단적인 의사표출

《표1》 불법집단 저항사태 현황

(단위:건, 명)

년 도	학 원		노 동		기 타		합 계	
	회수	인 원	회수	인 원	회수	인 원	회수	인 원
1981	43	15,666	197	24,059			240	39,725
1982	61	33,145	218	23,204			279	56,349
1983	143	74,200	185	15,193			328	89,393
1984	1499	424,226	184	25,294			1,683	449,520
1985	2138	469,974	332	39,588	19	530	2,489	510,092
1986	2001	475,692	397	57,260	298	47,732	2,696	580,684
1987	5581	1,556,325	4,676	714,311	1113	107,554	11,370	2,578,190
1988	4246	1,015,032	1,998	364,542	1911	140,397	8,155	1,519,971
1989	4526	4,267,126	1,703	398,729	2373	413,895	8,607	2,079,750

주1) 기타는 정치, 종교, 사회 및 문화부분으로서 1985년부터 통계 분리  
 주2) 상기자료는 치안환경실태 분석자료에서 인용함.

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양상을 위 <표1>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사회병리적 요인은 여러원인에 기인되고 있으나 소득재분배의 불공평에서 오는 빈곤계층의 확대, 사치·향락에 의한 범인성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편이나 여전히 불평등분배가 사회병리의 문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표2>. 이에 유흥접객업소의 여성종사자 집중화<표3>, 유흥 접객업소<표4> 및 유흥우려업소<표5>의 증가 등도 犯因性환경의 주요요인을 이루고 있다.

<표2>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지니계수)

구	분	전	국	시	부	군	부
1985년	지니계수	0.3449		0.3694		0.2969	
1988년	1 분위	2.81		2.80		2.93	
	2 분위	4.58		4.46		4.99	
	3 분위	5.65		5.47		6.19	
	4 분위	6.64		6.39		7.28	
	5 분위	7.60		7.35		8.38	
	6 분위	8.67		8.43		9.47	
	7 분위	10.01		9.79		10.74	
	8 분위	11.80		11.64		12.47	
	9 분위	14.62		14.58		14.99	
	10 분위	27.62		29.09		22.56	
	지니계수	0.3355		0.3496		0.2895	

- 주1)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는 전체 가구를 최저소득가구부터 최고소득가구에 10%씩의 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의 소득을 전체 가구소득의 백분비로 표시
- 주2) 소득집중도의 척도로는 로렌츠곡선 및 파레토계수도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니계수를 사용
- 주3) 지니계수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완전 균등분배 : 0.0
  - 낮은 불균등분배 : 0.4이하
  - 중간 불균등분배 : 0.4초과-0.5미만
  - 높은 불균등분배 : 0.5이상
  - 완전 불균등분배 : 1.0

《표3》 유흥접객업소 여성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윤락행위 종사자
추산인원(1989년)	100만명	8천명

주1) 유흥접객업소는 다방, 술집, 숙박업소 및 안락시설소등을 포함  
 주2) 윤락행위 종사자는 기지촌 및 사창가에서의 인원이며, 일반숙박업소 등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인원은 미포함.

《표4》 유희우려업소 현황(식품접객업소) (단위: 개)

구 분	년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대중음식점	137,924	146,227	157,201	164,556	175,652	187,463
인삼찜집	1,542	2,028	1,811	1,677	1,581	1,487
간이주점	7,746	8,704	2,234	862		
전통음식점	4,509	4,780	2,049	971		
유희음식점	4,353	5,147	12,462	14,400	16,153	16,805
외국인음식점	253	265	268	267	274	278
과자점	5,623	6,954	8,008	8,639	9,071	9,834
다방	27,019	30,822	34,388	36,859	37,834	39,128
휴게실	251	285	313	378	459	649
소 계	189,233	205,212	218,739	228,889	241,024	255,645

《표5》 유희우려업소 현황(환경위생업소) (단위: 개)

구 분	년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숙박업	28,829	29,311	29,972	30,445	30,821	31,482
이·미용업	59,830	65,195	70,379	74,422	77,386	80,700
목욕·수영장업	5,433	5,981	6,410	6,901	7,470	7,967
당구장	11,659	13,765	16,346	17,326	17,133	17,704
전자유기장	762	1,134	7,981	9,958	10,974	12,721
기타	349	303	300	282	200	217
유기장업	12,770	15,202	24,627	17,566	28,337	30,642
합 계	106,362	115,689	131,388	139,334	144,014	150,791

이상에서 본 경제측 측면의 범인성 요인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졸부들의 무절제한 과시성소비로 인하여 중류층 이하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폭됨과 더불어 사치성욕구에 의한 범법을 유발하고 있는점과

둘째,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 목표감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됨에 따라 퇴행성 소비풍조가 유발되고 있고,

끝으로, 절대적 빈곤층이 상존함과 더불어 범죄성 피보호대상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犯因性환경은 여러요인보다 질량면에서 多元的이고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첫째, <표6>에서 보는 바와같이 도시화의 팽창에 따른 逆기능이다. 인구가 과도하게 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대인관계의 몰인격화 및 과도한 경쟁의식이 유발되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남을 못하게 하자'는 의식이 팽배하고 이는 결국 범죄행동의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의 직접적인 인과구조는 밝힌바 없으나 결과적으로 범죄발생의 지역별 분포에서 보면 <표7>의 간접적인 인과구조에서 설명될 수 있다.

<표6> 도시화율 현황

(단위: %)

년 도	1970	1980	1985	1986	1987	1988
도시화율	50.2	68.7	74.3	75.2	76.3	77.8

주) 도시화율 = 도시(시 및 인구 2만 이상의 읍) 인구/전국인구×100

그리고 이에 따른 핵가족화 경향도 심화되어 <표8>의 도시 핵가족화가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상기의 첫째요인과 상승작용하고 있는 인구의 이동성을 들수 있다. <표9>

이 인구의 이동성은 근린관계 및 공동체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표7》 강력범죄의 발생지역별 분포(1989)

	대도시	중소도시	이외지역
殺 人	60.4	11.6	28.0
強 盜	81.7	8.2	10.1
強 姦	60.5	12.2	27.3
放 火	60.7	14.2	25.1

자료: 범죄백서, 1990, p. 39. 법무연수원.

《표8》 핵가족화 현황

(단위: 명)

년 도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가구당인원	5.1	4.8	4.4	4.2	4.2	4.1	4.0	3.8

《표9》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이동자수	이 동 율		
		총이동율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1981년	8,194,516	21.4	14.1	7.3
1982년	8,616,474	22.1	14.9	7.2
1983년	9,795,811	24.7	16.6	8.1
1984년	9,043,238	22.4	15.0	7.5
1985년	8,679,097	21.4	14.2	7.2
1986년	8,660,428	21.3	13.8	7.4
1987년	9,308,750	22.6	14.7	7.9
1988년	9,969,020	23.9	15.8	8.0

주) 인구이동율 = 거주지 이동인구 (구, 시, 군단위 이상) ÷ 총인구 × 100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된 구성원의 이질감 및 익명성은 범죄기회를 제공하고 범행은닉을 용이화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상기 첫째, 둘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사치향락산업 및 빈민하위문화형성을 들수 있다. 사치향락산업이 도시 중심으로 범람하고, 무작정 상경자를 비롯한 빈민의 하위문화가 형성되어 범인성환경 및 범죄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표10>

<표10> 서울시의 주요 유흥오락업소 현황

(단위: 개, %)

구 분	1984년	1989년	증가지수
호 텔	97	150	154.6
성인오락실	138	392	284.1
청소년오락실	33	3,945	11,954.5
다 방	8,031	9,531	118.7
유흥음식점	1,040	1,681	161.6
수입식품판매업소	68	549	807.4

주) 성인오락실은 1987년 기준

상술한 바 있는 貧民下位文化理論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경제적 貧困은 犯罪性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1968년도 刑法犯罪者의 생활정보 분석에서도 <표11> 잘 나타나고 있다.

<표11> 刑法犯 피의자의 생활정도

(단위: 명, %)

	극빈계층	下流層	中流層	上流層
총범죄	26.4	13.3	58.1	2.2
강력범	26.4	11.4	60.1	2.1
도 범	43.1	4.2	51.7	0.4
폭력범	25.1	16.5	60.8	2.8

자료: 수사백서(1968) pp. 62-63.

이는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별 分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表12)

1985년과 1989년도 비교해 보면 下流가 89.6%에서 85.8%로 中流가 10.0%에서 13.6%로, 上流가 0.5%에서 0.6%로 각각 변동되어 구성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構成比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12》 少年犯罪者の 生活程度別 構成比(1985-1989)

생활정도 年度	下 流	中 流	上 流
1985	89.6	10.0	0.5
1987	88.7	10.8	0.5
1989	85.8	13.6	0.6

자료 : 범죄백서(1990) 법무연수원. p. 92.

넷째,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사회학자 밀러(S. Miller)는 빈민계층의 生活상태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가족관계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2가지를 지적하고 이 두가지면에서 安定性여부를 보았고 이에서 빈민을 ①安定된 빈민, ②진장된 빈민, ③노력하는 빈민, ④不安定한 빈민으로 나누었다. 이에서 밀러는 不安定한 빈민에서 非行靑少年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이를 成人犯罪者에서도 찾아보았다.<sup>11)</sup>

이 이론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가정안정성을 가족관계의 안정성(family stability)에서보면 대체로 <表13>, <表14>에서와 같이 부도적가정 및 결손가정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의 권위와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의 소홀과 퇴행성 과잉보호가 청소년의 일탈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찾아볼수 있었다.

《표13》 이혼 현황 (단위: 건, %)

년도	이 혼 사 유					합 계	증가율
	부부불화	가족불화	건강문제	경제문제	기 타		
1981	18,292	1,312	640	943	2,986	24,173	3.1
1982	20,293	1,184	655	973	3,109	26,214	7.8
1983	22,235	1,284	631	978	3,214	28,342	7.5
1984	27,260	1,363	620	1,085	3,762	34,092	16.9
1985	29,049	1,532	574	1,038	3,582	35,775	4.7
1986	28,844	1,489	580	1,000	3,698	35,611	-0.5
1987	29,454	1,213	617	910	4,210	36,404	2.2
1988	26,358	1,108	460	646	2,986	31,558	-15.4

11) Ibid pp.22-39.

《표14》

불안정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천가구당)

구 분	불안정 가구수	형 태 별 불 안 정 가 구 비 율					합 계
		노 인	미성년자	편부모	기 타		
1975년	시부	172	18.0	5.8	2.8	3.1	29.7
	군부	37	10.9	12.7	10.6	9.2	43.4
	전국	209	17.1	6.7	3.8	3.9	31.5
1980년	시부	133	12.3	2.9	1.3	2.9	19.5
	군부	119	65.3	14.3	10.8	11.1	101.6
	전국	251	20.1	4.6	2.7	4.1	31.5
1985년	시부	203	20.0	3.6	1.2	0.4	25.2
	군부	232	101.8	17.4	11.3	24.4	154.8
	전국	436	32.8	5.7	2.8	4.1	45.5

주1) 불안정가구비율은 = 불안정가구수 / 총가구수 × 1000

2) 형태별 불안정가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 가구 : 60세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노인단독가구
- 미성년가구 : 18세미만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성년자 단독가구
- 편부모가구 : 편부모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구
- 기타 가구 : 편부모, 편부모의 형제자매 및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편조부모, 편부모,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구

4. 文化的要因

文化的측면에서 본 병리요인은

첫째, 서구문화의 개인주의가 과도되어 이타주의가 상실되고 소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가 만연되고 있고,

둘째, 성규범이 혼란됨에 따라 억제되어 온 성욕이 급격히 표출되고 선정적 퇴폐문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기지춘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통한 불량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있는점과

셋째, 연고의식이 부정적 의미의 파벌의식으로 발전하여 집단 및 개인간의 불신풍조를 만연시킨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무절제한 음주형태 및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통한 접대문화가 퇴폐향락업소를 증가시키고 퇴폐향락업소가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고,

다섯째, 사행도박성·음란향락성 놀이문화가 성행하여 건전근로의

식의 퇴조 및 퇴폐향락풍조의 만연과 악순환적 상승작용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섯째, 상류층을 모델로한 TV프로그램 및 부분별한 선전광고가 일반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하고 기대수준을 증폭시킴으로써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점이다.

끝으로, 시청율경쟁에 따른 말초적·충격적 TV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언론출판의 자유화 및 비디오문화의 보급에 편승하여 불량출판물 및 음반이 보급됨에 따라 폭력·음란성문화가 만연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상의 특징을 분석자료에서 보면 <表15> <表16> <表17>과 같다.

<표 15> 공연물 심의 현황 (단위 : 편)

구 분	유			형	
	외 설	퇴 폐	폭 력	기 타	합 계
영 화	84		76	20	180
비디오	44	14	52	8	118
합 계	128	14	128	28	298

주) 문화공보부 1988년 실적

<표 16> 불법비디오테이프 현황 (단위 : 건, 개)

불 법 비 디 오 제 작	불 법 비 디 오 단 속	
	단 속 건 수	비 디 오 테 이 프
년간 500만개 이상으로 추정	5,135	2,450,100

주: 문화공보부 1990년 1-8월 실적

<표 17> 불법·유해유선방송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 분	단 속 업 소		
	유 선 방 송 업 소	자 가 비 디 오 업 소	합 계
단속건수	2,773	9,797	12,570

주) 문화공보부 1988년 실적

5. 범죄추이와 예측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범죄 추이를 거시적으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이때 거시분석의 기본구조는 범죄통계를 종속변수로, 사회통계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1970년부터 1989년까지 2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회귀분석 방법(Stepwise Regression Analysis)으로 처리하여 최적회귀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이때 회귀분석의 변수선정은 종속변수로서 刑法犯과 特別刑法犯,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총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고, 경험법칙 및 학술적으로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회통계지표로서 인구, GNP, 1인당GNP, 자동차대수, 도시화율로 하였다. <表18>

<표18> 총범죄와 사회통계지표의 상관관계

(단위 : 건)

독립변수	인 구	GNP	1인당GNP	자동차대수	도시화율
결정계수	0.94	0.91	0.92	0.87	0.91

- 주1) GNP는 경상가격 기준의 억달러 단위
- 주2) 1인당 GNP는 경상가격 기준의 달러 단위
- 주3) 도시화율 = (시인구 + 인구 2만이상 읍인구) / 총인구 × 100

이와같은 회귀분석의 결과 첫째, 刑法犯은 인구만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는 단순회귀모형이 최적으로 판명되며, 이때의 회귀식은 형법범을 Y1, 인구를 X1(천명 단위)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구하게 되었다. (자료는 <表19> <表20> 참조)

$$Y1 = -1,074,112 + 39,561 X1$$

<표19>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의 결과(형법범)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회귀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변수명	R2	변수명	PARTIAL CORRELATION
인 구	0.963914	G N P	0.1792
		인당GNP	0.1413
		자동차수	0.2609
		도시화율	-0.5362

《표20》 최적회귀모형의 통계량(형법범)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OB. >  T
INTERCEPT	-1,074,112	68,263	-15.7395	0.0000
SLOPE	39.561	1.8042	21.9272	0.0000

주1) R2 = 0.96391  
 2) STND. ERROR OF EST. = 25,332

다음의 特別刑法犯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는 GNP만을 회귀 모형에 포함시키는 단순회귀모형이 최적으로 판명되며, 이 때의 회귀식은 특별법 범죄 Y2, GNP를 X2(경상가격 역불 단위)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구하게 되었다. (자료는 <表21> <表22> 참조.

$$Y2 = 83,953 + 170.724 X2$$

《표21》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의 결과(특별형법범)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회귀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변수명	R2	변수명	PARTIAL CORRELATION
GNP	0.935585	인구	0.1773
		인당GNP	0.0528
		자동차수	0.0733
		도시화율	0.1613

《표22》 최적회귀모형의 통계량(특별법범)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OB. >  T
INTERCEPT	83,953	9,026	9.3009	0.0000
SLOPE	170,724	10,5587	16.1691	0.0000

주1) R2 = 0.935585  
 2) STND. ERROR OF EST. = 25,387

이상 첫째, 둘째의 분석의 결과(회귀방정식)를 토대로 향후 범죄 추이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은 범죄예측모형에 이르게 된다.

$$Y = Y1 + Y2$$

$$= (-1,074,112 + 39.561 X1) + (83,953 + 170.724 X2)$$

(종속변수: 총범죄 Y, 형법범 Y1, 특별법범 Y2)  
 (독립변수: 인구; X1(천명, 단위), GNP; X2(경상가격 억불 단위)

그리고 이에의한 1996년까지의 범죄예측치를 추정해 보면 다음 <表22>과 같이 나타난다.

《表22》 1996년까지의 범죄예측치

년 도	사 회 통 계 지 표		범 죄		
	인 구	GNP	형법범	특별범	총범죄
1990년	42,793	2,317	618,822	479,521	1,098,343
1991년	43,207	2,592	635,200	526,470	1,161,670
1992년	43,623	2,899	651,658	578,882	1,230,540
1993년	44,040	3,243	668,154	637,611	1,305,765
1994년	44,456	3,628	684,612	703,340	1,387,952
1995년	44,870	4,059	700,990	776,922	1,477,912
1996년	45,281	4,540	717,250	859,040	1,576,290

주1) 인구예측치(천명 단위)는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지표(1990)' 참고  
 2) GNP예측치(경상가격 억불 단위)는 경제기획원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1990. 9)' 참고.

#### IV. 結 論

엄격히 말하면 犯罪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環境요인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은 全體를 보는 것이 아니라 部分을 본다고 밖에 볼수 없는 限界性を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일차적 近因의인 것으로 犯罪행동요인이 있고 2次的 遠因의인 것으로 犯罪環境요인이 제시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범죄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전통적으로 보아온 環境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정도의 犯因性 정도를 지니는가 즉 경로분석 등에 의한 영향요인의 크기정도는 규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직·간접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環境요인을 중심으로 犯因性を 밝혀본 것에 의미를 둔다. 향후 심층분석에서는 이 영향요인의 크기를 행동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직접요인과 간접요인,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종속변수: 총범죄 Y, 형법범 Y1, 특별법범 Y2)  
 (독립변수: 인구; X1(천명, 단위), GNP; X2(경상가격 억불 단위)

그리고 이에의한 1996년까지의 범죄예측치를 추정해 보면 다음 <表22>과 같이 나타난다.

《表22》 1996년까지의 범죄예측치

년 도	사 회 통 계 지 표		범 죄		
	인 구	GNP	형법범	특별범	총범죄
1990년	42,793	2,317	618,822	479,521	1,098,343
1991년	43,207	2,592	635,200	526,470	1,161,670
1992년	43,623	2,899	651,658	578,882	1,230,540
1993년	44,040	3,243	668,154	637,611	1,305,765
1994년	44,456	3,628	684,612	703,340	1,387,952
1995년	44,870	4,059	700,990	776,922	1,477,912
1996년	45,281	4,540	717,250	859,040	1,576,290

주1) 인구예측치(천명 단위)는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지표(1990)' 참고  
 2) GNP예측치(경상가격 억불 단위)는 경제기획원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1990. 9)' 참고.

#### IV. 結 論

엄격히 말하면 犯罪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環境요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全體를 보는 것이 아니라 部分을 본다고 밖에 볼수 없는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일차적 近因의인 것으로 犯罪행동요인이 있고 2次的 遠因의인 것으로 犯罪環境요인이 제시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범죄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전통적으로 보아온 環境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정도의 犯因性 정도를 지니는가 즉 경로분석 등에 의한 영향요인의 크기정도는 규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직·간접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環境요인을 중심으로 犯因性을 밝혀본 것에 의미를 둔다. 향후 심층분석에서는 이 영향요인의 크기를 행동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직접요인과 간접요인,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